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264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

1953년 창설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법 개정운동을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정하고 한 세기 동안 화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자,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15일에 입헌위원회가 구성되어 '헌법 중 천주상대권'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날에 헌법위원회가 하원을 국민주주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그 이원적인 헌법, 특히 천주상대권은 헌법에서 존엄으로 다루어져서 부제헌법과 입헌법통을 중심으로 한 남여차별적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우리 나라 첫 여성 변호사이던 이태영 선생님을 헌법과 그 봉건적인 조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아 지적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나중에 그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란 천주상대권과 같은 보편성을 지녀야 하는데, 도리어 법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이 많았던 현실 속에서 법 개정운동은 절실히 요구되는 일차적 과제라는 인식이 같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3년 창설되자마자 입헌운동과 가정의 민주화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리 구원을 목표로 한 법률구조,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법률구조의 전국화를 위한 지부설치 사업과 함께 가족법 개정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아 집현에 나섰습니다. 개정운동은 고종과 연인의 사랑을 보내다 상담소를 찾은 이들의 사연은 헌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부조리한 관습과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았으므로, 상담소는 가족법을 바꾸게 노력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법 개정운동은 법률구조 사업을 병행해 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소는 가정관계의 근본적 요인들을 해결하려면 가족법 개정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의 인격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법 개정운동의 지나간 과정은 논쟁과 연습 그리고 분노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

머리말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향해 달려온 60년

-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을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956년 창설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법 개정운동을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정하고 반세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자, 이를 토대로 9월 15일에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헌법이 남녀평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그 하위법인 민법, 특히 친족상속편은 현실과 관습준중론에 치우쳐서 부계혈통과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남녀차별적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첫 여성 변호사이던 이태영 선생님은 민법의 그 봉건적인 조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누구보다 앞서 지적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나중에 그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란 원래 목적대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법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이 많았던 현실 속에서 법 개정운동은 절실하고도 긴박한 문제라는 인식이 깊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창설되자마자 양성평등과 가정의 민주화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목표로 한 법률구조,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법률구조의 전국화를 위한 지부설치 사업과 함께 가족법 개정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실천에 나섰습니다. 가정문제로 고통과 번민의 나날을 보내다 상담소를 찾은 이들의 사연은 현행법으로 해결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부조리한 관습과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았으므로, 상담소는 가족법을 바르게 고쳐야 법률구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법 개정운동은 법률구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소는 가정문제의 근본적 요인들을 해결하려면 가족법 개정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법 개정운동의 기나긴 과정은 눈물과 한숨 그리고 분노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는 뜻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의 앞장에 서서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한 뒤 마침내 2005년에 호주제 폐지를 이루어냄으로써 거대한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적 성취는 하루아침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을 바르게 읽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생활화, 서민화하는 교육을 하는 한편 캠페인과 강연, 서명운동을 통해 가족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회단체들과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국회의 문을 무수히 두드리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서 쟁취해낸 결과였습니다. 1962년의 첫 개정과 1977년과 1990년의 2차·3차 개정을 거쳐 남녀차별의 근본적 토대인 동성동본 금혼규정과 호주제의 폐지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뒤에도 상담소는 완전한 양성평등, 부부평등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이루는 바탕인 가족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1948~2008)』(이하 60년사)는 이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나긴 세월은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권’과 ‘법의 보호’를 올곧게 돌려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벌인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실에 힘입어 사회적 약자들은 단계적으로 인권과 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계혈통, 남계혈통 위주의 법과 제도, 관습에 얽매어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온 여성들이 비로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양성평등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1991년에 가족법 3차 개정 이후 그 과정을 기록한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이하 37년사)를 펴낸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 『60년사』는 『37년사』를 바탕으로 그 뒤의 기록을 보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37년사』에서는 1958년의 신민법 제정을 제1차 개정으로 정의했으나, 『60년사』에서는 학계의 논의를 근거로 1962년, 1977년, 1990년, 2002년, 2005년, 2007년으로 개정의 역사를 가다듬어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이 『60년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1948~1962)

제2부 2차 가족법 개정(1963~1977)

제3부 3차 가족법 개정(1978~1990)

제4부 4차 가족법 개정(1990~2002)

제5부 5차 가족법 개정(1999~2005)

제6부 6차 가족법 개정(2000~2007)

부록

이런 과정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개정운동이 펼쳐졌기 때문에 연대구분을 하면서 그 연속성을 살렸습니다. ‘부록’에는 법 개정안, 성명서, 의견서, 제안서, 청원서 등 관련 자료들을 모두 실었는데, 『37년사』 ‘자료편’에 들어 있는 1990년 제3차 개정까지의 자료들은 생략했습니다.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려는 노력의 발판이라는 믿음으로 만든 책입니다. 가족법 개정운동의 역사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을 새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저는 1970년대 초반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실무자로 출발해서 2000년대에 들어 책임자로서 법률구조 사업과 아울러 가족법 개정운동을 펼쳐 오면서 숱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켜보면서 수십 년 동안 쌓인 피로와 울분을 한 순간에 떨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본권과 인권을 찾아 준 운동의 60년사를 오는 책으로 펴내면서, 『37년사』를 세상에 선보이던 날 이태영 선생님의 감격 어린 모습을 그려 봅니다. 그리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을 때 걸음을 멈추고 귀한 서명을 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염원이 오늘 이 『60년사』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열매입니다. 특히 이 운동의 초기 단계부터 상담소의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활동하셨고, 이 책의 기획에 큰 도움을 주시는가 하면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 본소 차명희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가족법 개정운동의 일선에서 일하는 상담소 모든 직원들과 집필을 맡으신 작가 이화분 님, 책 제작 전반을 주관하신 본소 이숙현 출판부장님께도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상담소 임직원들은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발간을 계기로 완전한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위한 가족법을 만들기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2009년 10월

제1부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1948~1962)

제1장 가족법 개정운동의 시작 ————— 34

1.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 이념 _ 34
2. 친족상속편 기초안 성립 과정 _ 35
3. 민법 개정운동의 신호탄 _ 38
4. 건의문 제출 _ 39

제2장 민법 초안에 드러난 불평등적 요소 ————— 42

1. 법적 불평등의 구체화 _ 42
2. 보수세력과의 대립 - 국회 공청회 _ 47
3. 불평등한 입법안에 대한 적극적 대처 _ 53

제3장 민법에 남녀평등을 담기 위한 노력 ————— 54

1. 여성계 민법 수정안 국회 제출 _ 54
2. 정부 민법안에 담긴 보수성 _ 55
3. 동성동본 금혼규정 논쟁 _ 57
4. 민법안 축조심의 과정 _ 60
 - 1) 친족범위 규정의 심의
 - 2) 혼인 외 출생자의 입적 규정 심의
 - 3) 동성동본혼 금지에 관한 심의
 - 4) 신고혼주의와 거식혼주의의 심의
 - 5) 부부간의 동거부양의무 규정의 심의
 - 6)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규정의 심의
 - 7) 부부간의 특유재산과 소속불명재산에 관한 규정 심의
 - 8) 협의이혼신고의 실질적 심사에 관한 수정안 심의
 - 9) 협의이혼 시 재산분여제도에 관한 수정안의 심의
 - 10) 부모공동친권주의 수정안 심의
5. 여성계, 국회의사당 앞 첫 시위 _ 69

제4장 신민법의 탄생 ————— 70

1. 신민법에 나타난 여권신장 _ 70
2. 남녀불평등의 봉건적 잔재들 _ 74
 - 1) 친족범위에 있어서 남녀불평등
 - 2) 가봉자녀입적과 서자입적

- 3) 호주상속 순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 4) 재산상속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 5) 소속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부당한 소유 추정
- 6) 친권은 부가 우선적으로 행사한다
- 7) 동성불혼원칙의 존치
- 8)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의 인정
- 9) 사후양자·유언양자·위가양자제도의 존치
- 10) 양호주파양의 금지
- 11)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 12)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의 분가·거가·입양의 금지
- 13) 호주상속권의 포기 금지

제5장 1차 가족법 개정 ————— 77

1. '가족법'이라는 용어의 확립 _ 77
2. 법정분가제의 신설 _ 78

제2부 2차 가족법 개정(1963~1977)

제1장 가족법 개정운동의 첫 결실과 도전 ————— 80

1. 가사심판법 제정 _ 80
2.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 결성 _ 81
3. 촉진회의 조직과 활동 방향 _ 83
4. 지회 결성을 위한 노력 _ 84
5. 지도자 훈련과 활동 방향 수정 _ 86

제2장 가족법 개정안 작성 및 제출 ————— 88

1. 가족법 개정안 작성 _ 88
2. 개정법안 전달과 통과 촉구 _ 89
3. 변질된 수정안 제출로 인한 갈등 _ 91
4. 개정안 원안 국회 제출 _ 93
5. 가족법 개정 여론조사 _ 94
6. 가족법 개정 공청회 _ 95
7. 한국가족제도수호위원회의 반대 공격 _ 96

제3장 동성동본 금혼규정 철폐운동의 본격화 ————— 97

1. 요식행위에 그친 공개심의토론회 _ 97
2.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희생양 _ 98
3. 가족법 개정 청문회 _ 99
4. 동성동본 혼인문제 사례발표회 _ 100
5. '동성동본불혼제도 개정촉진회'의 활동 _ 101
 - 1) 가두 서명운동에 나서다
 - 2) 동성동본 연극 - 「사랑의 벽」이 공연되다
 - 3) 동성동본불혼제도 개정 '청원서' 제출
6. 반대 측 공개심의 토론회 _ 104

제4장 2차 가족법 개정의 명암 ————— 106

1. 집권 공화당의 정치적 조치 _ 106
2. 부분 개정안 수정 논의 _ 107
3. 민법 개정안 대안의 국회 통과 _ 109
4. 개정가족법의 내용과 평가 _ 111
5. '혼인에 관한 특례법' 계몽활동 _ 112
6. 촉진회의 해산 그리고 새로운 결의 _ 114

제3부 3차 가족법 개정(1978~1990)

제1장 다시 시작된 가족법 개정운동 ————— 116

1. 가족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 _ 116
2.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 _ 117
3. 여성연합회 조직확대 전략 _ 120

제2장 가족법 개정을 위한 활동 전개 ————— 121

1. 대국민 여론조성과 100만 인 서명운동 _ 121
2. 국회의원 개별면담을 통한 입법 촉구 _ 123
3. '가족법 개정안' 마련 _ 125
4. 유림세력의 가족법 개정 반대 단체행동 _ 126
5. 가족법 개정운동 역량의 결집 _ 127

제3장 수포로 돌아간 개정안 제출 ————— 130

1. 청원서 제출과 건의서 발송 _ 130
2. 국회의원들, 개정안 제안서명 거부 _ 132
3. 개정안 제출 좌절에 따른 후속조치 _ 135

제4장 가족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38

1. 여성유권자 선언과 꾸준한 계몽활동 _ 138
2. 인구억제 시책으로 촉발된 법 개정운동 _ 139
3. 가족법 개정안 국회 제출 _ 142
4. 혼인특례법은 통과, 개정안은 폐기 _ 144

제5장 제13대 국회를 향한 재도전 ————— 146

1. 제13대 국회를 겨냥한 행동전략 _ 146
 - 1) 후보 1천여 명 중 응답자 겨우 137명
 - 2) 응답자 99% 개정 찬성
2. 가족법 개정안 13대 국회에 제출 _ 148
3. 여성단체들과의 연대 _ 152
 - 1) 다시 145회 정기국회를 향하여
 - 2) 서울시민 79%가 가족법 개정 찬성
4. 헌법정신에 입각한 법 개정운동의 선언 _ 155
5.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 _ 156
6. 야 3당 총재 면담과 각계 인사 서명운동 _ 158
7. 대통령에게 가족법 개정 촉구서한 발송 _ 160

제6장 3차 가족법 개정을 성취하다 ————— 161

1. 법사위, 수정안 의결 발표 _ 161
2.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_ 162
3. 개정가족법의 주요 내용 _ 163
 - 1) 호주제도의 개정
 - 2) 친족범위의 조정
 - 3)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 4) 친권제도의 개정
 - 5) 이혼부부의 자녀양육 규정의 개정
 - 6) 재산상속제도의 개정
 - 7) 적모서자와 계모자관계의 개정
 - 8) 그 밖에 개정된 내용
4. 아직 끝나지 않은 가족법 개정운동 _ 168

제4부 4차 가족법 개정(1990~2002)

제1장 새로운 가족법 홍보활동 ————— 170

1. 홍보활동의 필요성 _ 170
2. 시민공개강좌와 홍보책자 출판 및 가두 캠페인 _ 171
3.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발간 _ 174
4. 개정가족법 전국 순회강연 계획 및 비디오 제작 배포 _ 175

제2장 개정가족법 시행에 앞선 세제 개편 노력 ————— 176

1. 개정가족법과 관계법 손질의 필요성 _ 176
2. 개정가족법 학술 세미나 _ 178
3. '여성과 세법 개정' 토론회 개최 _ 179
4. 세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 _ 180

제3장 다시 시작된 가족법 개정운동 ————— 182

1. 동성동본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_ 182
2. 피해자모임 결성과 강연회 _ 184
3. 청원서 제출 _ 187
4. 두 번째 청원서 _ 192
5. 대구지방법원 조용식 판사에게 보낸 격려편지 _ 194
6. 법정투쟁 시작을 선언하다 _ 197
7.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결정되다 _ 199
8. 혼인에 관한 특별법 제정 _ 200
9.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 개시 _ 202
10. 헌법재판소, 동성동본 금혼 - 헌법불합치 판결 내리다 _ 206
11. 헌법불합치 결정 후의 동성동본금혼법 _ 212
12. 민법개정안의 표류와 폐기 _ 217

제4장 4차 가족법 개정 ————— 219

1.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개정 _ 220
2.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채택 _ 220

제5부 5차 가족법 개정(1999~2005)

제1장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대를 닦다 ————— 222

1. 호주제 폐지를 위한 대안 마련 _ 222
 - 1) 호주제 폐지를 대비한 준비
 - 2)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3)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4) 호주제는 남성우위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2.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결성 _ 231
 - 1) 시민사회단체 연합을 위한 움직임
 - 2) 법무부 주최,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
 - 3)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 4)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 5)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제2장 호주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 244

1. 호주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_ 244
 - 1) 서명운동의 본격화
 - 2) 호주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 3) 호주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 4) 호주제 폐지를 위한 집중 노력
 - 5) 헌법재판관 9인에게 의견서 제출
 - 6) 호주제 문제를 주제로 한 첫 학술대회
2. 친양자제도를 중심으로 한 민법개정안의 중요성 _ 254
 - 1) 민법개정안 공청회 개최
 - 2) 호주제에 대한 국회의원 의식조사 결과
 - 3) 민법개정안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견해 확인
 - 4) 민법개정안에 관한 상담소의 의견
 - 5) 2차 호주제 위헌소송 제기
 - 6) 호주제 폐지를 위한 홍보활동
 - 7) 상담소 창립 46주년 기념 강연회

제3장 마침내 호주제 폐지를 이루다 ————— 276

1. 호주제 폐지를 향한 운동의 심화 _ 276
 - 1) 호주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판단
 - 2) 호폐연과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 3) 상담소, 호주제 폐지를 위한 특별기획단에 참여
 - 4) 호주제 폐지, 의원입법으로 발의
 - 5) '호주제 폐지 272' 발족
 - 6) 호주제 폐지 대안 심포지엄
 - 7) 법무부 '민법개정안' 이 마련되기까지
 - 8)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 실현 시민한마당' 개최
 - 9) 법무부 민법개정안 공청회
 - 10) 법무부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2. 17대 국회로 넘어간 호주제 폐지 법률안 _ 300
 - 1) 보수의 벽을 넘지 못한 민법개정안
 - 2) 호주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진행 상황
 - 3) 17대 국회에 다시 법안 제출
 - 4) 대국회 호주제 폐지운동 전개
 - 5) 호주제 폐지 및 민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6) 민법개정에 관한 공청회
 - 7) 호주제 위헌소송 5차 최후 변론
 - 8) 호주제 폐지, 다음 국회로 미뤄지다
3. 호주제 헌법불합치 선고, 그리고 폐지되다 _ 318
 - 1)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 마련
 - 2)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 3) 신분공시에 대한 공청회
 - 4) 호주제 폐지 이루어지다
 - 5) 호주제 폐지 이후
 - 6) 제5차 개정가족법의 내용
 - 7) 가족관계등록법 제정(2007)
 - 8) 호주제 폐지 후 변화되는 것
 - 9)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결과 달라지는 것들
 - 10) 목적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6부 6차 가족법 개정(2000~2007)

제1장 양육비 이행확보 및 부부재산제 개정을 위한 노력 — 344

1.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심포지엄 개최 _ 345
2. 부부재산제 관련 심포지엄 개최 _ 348
 - 1) 부부재산제에 관한 의견들
 - 2) 설문조사 결과
3. 부부재산제에 대한 검토와 대안 _ 353
 - 1)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
 - 2) 부부재산제에 대한 상담소의 대안
4.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재산제 개정안 공청회 _ 356
5. 법무부 정책기획단과의 간담회 및 강연회 개최 _ 361
6. 양육비선급법 _ 362

제2장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를 위한 노력 — 365

1.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_ 365
2. 이혼숙려기간의 제도화를 위한 설문조사 _ 367

제3장 이혼숙려기간 제도 도입을 둘러싼 공방 ————— 371

1. '협의이혼과 상담' 공청회 _ 371
2. 개혁위원회의 최종 의견과 상담소 입장 _ 374
3.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제출 _ 376
4.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 _ 378
5.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법안 제출과 논란 _ 379

제4장 6차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지다 ————— 380

1. 법무부, 민법(친족·상속편)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_ 380
2.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상담소의 평가 _ 383
3. 6차 가족법 개정 - 이혼숙려제도, 부부재산제(일부) 국회 통과 _ 384
4. 6차 개정가족법의 내용 _ 385

제5장 가족법 개정운동의 남겨진 과제들 ————— 387

1. 가족법 개정과 남겨진 과제들 _ 387
 - 1) '비혼모에 인권은 있는가-비혼모 가정의 법적 권리와 복리'
 - 2)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 3)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4) '별거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 5) '변화하는 사회와 사실혼의 법적 보호 심포지엄'
 - 6) '면접교섭권-부모의 권리인가, 자녀의 복리인가'
 - 7) 상담소의 부부재산제 개정안
2. 호주제 폐지를 넘어, 모두의 가족법으로 _ 392

부록

부록 ————— 395

- 1 세법개정을 위한 청원서 _ 398
-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태영 소장 청원서 _ 400
- 3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_ 402
- 4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_ 404
- 5 서울가정법원 위헌심판제청결정문 _ 412
- 6 위헌법률심판제청 참고인 의견서 _ 425
- 7 동성동본 금혼규정 헌법불합치 결정문 _ 430
- 8 상담소를 비롯한 호폐연의 청원서 _ 450
-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 _ 453
- 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 _ 456
-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의 호주제 관련조항 위헌심판제청 결정에 대한 지지성명 _ 461
- 12 최영희 의원 입법안 - 친양자제도 중심 _ 463
- 13 한○○ 씨 무호주변경 신고불수리 통지서 _ 471
- 14 김○○ 씨 위헌여부심판제청서 _ 473
- 15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_ 475
- 16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성명서 _ 480

- 1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함승희 위원장에게 보낸 상담소의 의견서 _ 481
- 18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보낸 상담소의 의견서 _ 486
- 19 상담소 청원서 _ 489
- 20 호주제 위헌심판사건 3차 변론과 관련한 상담소의 의견서 _ 491
- 21 최재천 교수의 의견서 _ 500
- 22 박배희 소장의 헌법재판소 5차 변론조서 _ 504
- 23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담소 의견서 _ 515
- 24 법사위 의원 및 언론기관에 보낸 상담소의 성명서 _ 522
- 25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문 _ 524
- 26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친 상담소의 성명서 _ 562
- 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_ 564
- 28 상담소 개정안과 법률안 _ 566
- 29 상담소 법안을 국회 법제실 조정 거쳐 김재경 의원 안으로 제출 _ 577
- 30 6차 가족법 개정 이후의 가족법 조문 전문 _ 585
- 31 가족법 개정운동 연표(1948~2008) _ 638